

국내입양부모교육에 관한 방안 고찰

김외선*

요약

본 소고의 목적은 국내입양부모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입양부모는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입양이란 독특한 주제를 안고 아동의 적응 및 성장·발달을 돕는 쉽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배치 이후, 아동의 복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차적인 수호자로서, 입양부모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입양부모교육은 개정입양특례법 취지에 따른 입양가족사후관리 일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입양이슈를 다룰 수 있는 입양부모만의 부모역량을 갖추게 하는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대상인 입양부모만이 갖는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부족, 입양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의 부재 그리고 입양특성화 된 교육교재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본 소고는 국내입양부모교육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입양관련 문헌, 논문, 인터넷 자료 그리고 입양부모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교육대상인 국내입양부모들의 특징적 속성과 입양부모만이 갖는 특별한 부모역할과업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국내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입양부모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입양, 부모교육, 입양부모과업

*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장·입양부모

Corresponding Author : Korea Counseling Center for Adoptive Family, 295, Simindaero, Dongan-ku, Anyang, Gyeonggi-do, 14054, Korea, E-mail: kccaf1@gmail.com

I. 서론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실시된 지 63년이 지났다. 한국동란 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들이 외국의 자선단체에 의해 외국인 부모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으로 본격적인 아동복리를 위한 입양은 시작되었다. '70, '8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의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무수히 국외로 입양되었다.¹⁾ '86년 '88년 대회를 치루면서 한국의 국외입양은 국제적 비판을 받아 국가적 수치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의 국외입양중단의 노력은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된 입양법으로 국외입양의 수를 점차 줄여가는 입양쿼터제를 실시하였고, 국내의 공개입양부모들을 앞세워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입양홍보를 펼쳤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가정은 크게 늘지 않았고, 입양은 국가의 경제적 위상과 걸맞지 않는 아동인권 문제와 맞물려서, 사회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보호책으로 입양활성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일었다. 그 결과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왕성한 입양홍보는 주춤하게 되었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우선시하고, 입양아동의 인권보호와 자신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개정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11일 발효되었다.²⁾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민간단체가 주관해왔던 입양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담당할 것이라는 분명히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전의 입양기관의 허가로 이루어졌던 입양을 '법원허가제'로 변경했다.(제11조) '중앙입양원'을 정부산하기관으로 격상시켜서 입양기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제26조~제30조), 입양아동의 권리수호를 위한 자신에 관한 알권리를 보호(제36조), 입양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제23조), 입양부모 자격 강화(제10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입양특례법이 발효된 이듬해 5월,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국³⁾으로 사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국외·국내 모든 입양 건수는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1) 81년~ 90년 국외입양 65,321건, 국내입양 26,503건

2) 한국의 입양은 전통적으로 가계중심, 부모중심 입양으로 기능하다가, 2005년 개정 민법에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로 급격히 전환되었다.(안재진, 2010)

3) 국제입양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계약국 간의 중앙당국에 의한 입양승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를 추구한다.

곧 국외입양이 폐지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¹⁾

개정입양특례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입양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토록하여 입양아동 뿐만이 아니라 입양가족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 25조에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가족들의 상호적응과 입양아동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입양가정의 어려움을 수시로 도울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이 입양가정으로 옮겨진 이후의 입양부모의 역할수행을 돕는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입양가정 내에서조차 가능한 방임·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과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현행 입양특례법이 입양가족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란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입양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법적인 부모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양육자로서, 입양아동 권익의 일차적 수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입양현장에서는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교육은 대체로 체계를 갖추어 시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입양 후 부모교육은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입양부모의 인격에 전적으로 입양아동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부모들은 ‘선행을 베푸는 자’로 혹은 ‘남의 아이를 갖는 자’란 극단적인 편견적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어렵사리 부모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가족 내 혹은 주변으로부터 부모역할의 모델을 찾아보기 힘든 환경에서 부모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입양이란 독특한 이슈를 안고 부모노릇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하다보니 국내입양부모들의 입양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욕구는 충만해져 있으며, 백경숙·변미희(2001)의 연구조사에서 밝히기를 한국의 공개입양부모의 95.2%가 입양부모교육과 입양부모상담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본 소고는 입양부모교육의 교육대상이 되는 국내입양부모들의 공통된 속성을 살펴볼 것이다. 입양부모들만이 갖는 속성은 또한 입양부모들만이 갖는 독특한 부모과업과 관련된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국내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향후 국내입양부모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입양관련 문헌들, 입양기관의 홈페이지, 입양가족단체 홈페이지 및 중앙입양원 자료실을 통해 입양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포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양

1) 개정특례법 이후 입양업무를 종결한 기관이 늘어 현재 국내·외 입양알선기관 3개와 국내입양업무기관 7개로 총10개소에서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15년 국외입양 374건, 국내입양 683건 법원허락 되었음. (중앙입양원, 2016)

기관 담당자, 입양가족단체 실무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양부모들과 전화 및 면담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아동복지중심 입양’과 ‘입양부모역할’이란 두 가지 축으로 모았다. 입양이 아동복지형 입양일수록, 그리고 입양부모역할이 입양아동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입양문화형성에 기여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그것에 준거한 입양부모교육의 방안을 제안한다.

II. 국내 입양부모의 특징

입양부모란 사회의 입양법과 입양제도를 통해 자녀를 얻어 부모가 된 자를 칭한다¹⁾. 입양 절차 과정 중에 있고 아직 법적인 부모권한(양육권)에 대한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양 부모와는 구별된다. 친생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것이며, 스스로 진짜 부모되기를 자처하여 법적·사회적으로 부모로서 인정받은 자다.

입양부모는 크게 부모경험이 없는 ‘무자녀입양부모’와 이미 출산 혹은 입양으로 부모경험이 있는 ‘유자녀입양부모’로 나눈다. ‘무자녀입양부모’는 자녀생산이 어려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입양을 하는 경우인데, 드물게는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낳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자녀입양부모’는 이미 부모경험을 가진 사람이 입양을 하는 경우다. 입양을 수차례 반복하여 자녀를 많이 얻는 다자녀 입양부모들도 유자녀입양부모로 분류한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통해 부모되기를 선택했기에 비입양부모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을 몇 가지 공유하고 있다.

1. 적극적으로 부모된다.

국내입양부모는 우연하게 부모되지 않는다. 종종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생물학적인 부모들이 하는 ‘아이가 어찌다 생겼다’는 말은 입양부모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비록 입양초기에는 우연한 기회에 입양을 생각했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입양절차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1)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통한 입양부모를 칭한다. 사적 혹은 불법입양은 이곳에서 다루지 않음.

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입양절차과정에서, 입양부모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거쳐왔다. ‘우리는 정말 입양을 해야 하는가?’ ‘진짜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등 부모자신의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의문과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야 했고 또한 결정해야 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입양부모들은, 주변인들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입양을 계획했고 완결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다.

즉 입양부모란 자신이 출산하지 않은 아이를 자녀로 삼아 가족으로 맞이하겠다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했고, 길고 복잡한 부모허락받기 과정을 이루어낸 사람들로 부모가 되기 위한 적극성이 남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2. 소수 집단에 속한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지만, 실제로는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이 입양을 실천한다. 흔히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입양한다는 관념이 있지만, 입양제도를 통해서만 자녀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불임부부라고 하더라도 입양으로 부모되겠다는 선택을 결코 쉽게 하지 않는다. 즉, 임신과 출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입양으로 부모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다. 결혼한 부부의 약 15~20%가 불임으로 진단을 받지만 그들 중 입양으로 자녀를 갖는 부부는 0.3%에도 미치지 않는다. 2015년 683명의 국내입양 건 수에는 유자녀입양과 무자녀입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자녀 생산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원치 않고 지극히 소수만이 입양으로 부모됨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3. 부모자격을 검정 받는다.

입양부모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출산부모는 부부의 은밀한 장소에서 부모 될것을 스스로 결정하지만, 입양부모는 법적·사회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부모됨을 허락받는다. 달리 말하자면 부모자격심사를 거친 ‘선택된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입양활성화정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던 시기, 즉, 입양의 법원허가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입양부모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를 기다리는 아동은 많고 입양하고자하는 부모는 적었던 이유로 입양부모가 되겠다는 것은 사회적 기여라는 의식과 함께 환영받았고, 입양기관에서도 부모자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

게 즉각적으로 입양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부모조건을 강화시켜, 국내에서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허가 전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입양부모는 아동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무 범죄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부모기에 늦게 진입한다.

입양부모는 출산부모에 비해 부모기에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한 부부가 입양으로 자녀를 먼저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개별적 독특한 동기를 갖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먼저 시도할 것이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당연한 방법으로 아이가 오지 않거나 혹은 늦게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을 했으나 아이가 오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입양을 고려할 것이다. 그 시간들은 현대의학에 의지해서 시술을 거듭하거나 혹은 자신을 도박이며 보내는 시간일 수 있다. 입양을 결정하고 신청한 후 아이가 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안재진(2002)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부모들이 불임으로 인해 소비한 시간은 평균 7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친구나 동료부부들이 학부형이 되는 시기에 입양부모는 처음 육아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유자녀입양부모 혹은 다자녀 입양부모들은 늦둥이 혹은 막둥이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양아동의 나이대비 부모나이는 대체로 높은 편이고, 입양부모역할이 늦게 시작된다는 점은 무자녀 입양부모와 유사하다.

이렇게 늦게 부모기에 진입하는 입양부모들에게는 생리적·문화적 부조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

5. 부모의 입양동기는 사회적 편견과 맞물린다.

국내입양부모들이 입양을 선택한 동기으로써, 난임(불임)이 다른 동기에 의해 다수를 차지한다.¹⁾ 난임부부들은 자신들에게 ‘왔어야했던’ 아기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즉, 나이가 적고, 건강하고, 닳은 외모를 가졌고, 혈액형이 맞는 아동을 입양하기를 선호한다.

1) 총 입양건수 1,393건 중에 유자녀입양 553건(37.8%), 무자녀입양 909건(62.2%)임. 무자녀입양의 동기는 대부분 불임(난임)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2010)

입양담당 사회복지사들은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자녀는 사랑받기 쉬우니까, 가능한 예비부모의 욕구에 맞추어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요구조건을 갖춘 입양아동이 없으므로 종종 입양결연에 실패하기도 한다. 최근 여아 선호도 상승과 함께 더욱 부모중심의 ‘선별적 입양’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들도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들이 있다.

한편 한국사람들은 입양아동의 조건에 비교적 자유로운 비불임 입양부모들의 입양동기를 자기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선행자들이 하는 사회적 기여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¹⁾

불임과 비불임의 입양동기는 입양을 부모필요와 아동필요 혹은 정서적인 긍정과 부정이란 이분법적인 관념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입양편견’과 맞물려있다.

6. 덧붙여진 부모과업이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이란 독특한 주제에 연결된 부모역할과업을 갖는다.

지속적으로 입양이란 이슈를 다루어 가야하는 일은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체성에 관련된다. 입양부모 자신은 아동의 낯은 부모가 아닌 양육을 담당한 부모라는 점,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와는 다른 유전적·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아동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는 점, 그리고 입양상실감, 입양사실 알려주기, 입양편견 대처하기 등 비 입양부모는 갖지 않은 과제를 입양부모들에게는 ‘일거리’로 덧붙여진다.

이런 덧붙여진 일거리는 입양이란 법적절차를 마치고 입양가정 안으로 아동의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는 오히려 시작이며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입양에 관련된 부모과제는 종종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비밀입양을 선택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족원 모두의 정체성의 주요 요인이 되는 입양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게 되면, 입양가족 간의 어두운 비밀을 만들어 소통이 불가하고 서로의 신뢰감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모역할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 한국인들은 국외입양으로 인한 국가적 수치심과 보내어진 아동들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입양실천을 훌륭한 사회기여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고, 특히 유자녀입양부모들에게 이러한 집단적 심리가 더 강하게 투사되고 있는 듯하다.

Ⅲ. 입양부모의 과업

국내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덧붙여진 과업’에 대해 점차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다. 입양을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입양부모들은 경험했다. 부모역할모델을 보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남과 다른 방법으로 부모되어, 좋은 부모되기를 배울 기회도 없었던 자신들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입양부모들은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선택한 역할이 그냥 부모가 아닌 이 사회에서는 ‘도전적인 부모’의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특히 부모역할 초기에는 새 가족원 간의 적응을 위해서는 남다른 신체적·정신적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입양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빈약함은 국내 입양부모들로 하여금 ‘부모역할 장애’를 쉽게 경험하게 한다. 무심히 경험할 수 있는 부모역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입양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입양부모에게 주어진 역할 과업을 먼저 의식할 필요가 있다.

1. 친양자¹⁾ 탄생 신고하기

임신으로 출산한 부모는 병원발급 서류로 자녀탄생을 신고하지만, 입양부모는 법원발급 서류로 입양자녀의 탄생을 신고한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입양을 신청하면 담당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입양절차가 시작된다. 입양가능한 아동과 가상결연을 하고,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서 준비했던 두터운 입양청구 서류들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입양허가를 기다린다. 법원으로부터 ‘인용심판’을 확정받으면 입양허락이 되는데 입양허락과 함께 아동은 새 가정으로 옮겨온다²⁾. 입양부모는 ‘심판정보 및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구청, 시청,

1)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이 일반양자와 구별되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하게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자가 된다. 민법에서 입양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고, 입양특례법에는 2011년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인데,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두개의 법이 이중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2) 위탁 혹은 가족적응기를 갖는 경우는 아동이 법원허가 전에 미리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면사무소에 가서 1개월 내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하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와 친자로 등록되고, 입양절차는 종결된다.

국내에서는 입양아동을 출산아동처럼 출생신고를 했던 오랜 관행이 있었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입양아동뿐만이 아니라 입양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해악한 일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입양사실을 비밀로 부쳤다. 입양양성화 운동에 참여했던 공개입양부모라고 해도 입양아동을 자신이 낳은 친생자로 입적하는 사례는 허다했다. 민법의 ‘인우보증제’는 2명의 증인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런 방식은 입양기관에서 안내했던 공식적인 절차였고, 정부가 국내입양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연히 인정했다.

인우보증제 따라 입양아동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고 무효가 되겠지만, 부모-자녀간의 사실관계는 보호되어야하다는 해석 하에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었다. 또한 역으로 과양을 원할 시에도 또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인 관계가 없다는 증언으로 어렵지 않게 부모-자녀의 사실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¹⁾.

이렇듯 관과 민이 합의한 관행은 비밀입양, 사적입양, 불법입양의 온상을 만들고, 아동복리를 크게 저해하므로 입적신고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현행 개정입양특별법이 도입한 ‘친양자제도’는 합법적으로 친부모-친자녀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부모에게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고도 친부모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2. 지체된 아동발달 촉진시키기

모든 입양아동은 최소 한번 이상의 주 양육자와 분리된 경험을 했다²⁾. 이전 양육자와 분리 이후 입양가정으로 옮겨지는 동안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동의 양육환경은 방임 혹은 학대적일 수 있다. 그런 열악한 환경과 시간을 지난 후 입양부모를 만났을 때 아동은 성장을 위한 발달과업을 수행치 못하고 지체되었거나 정지되어있다.

주 양육자와의 분리와 부재 혹은 ‘반복된 양육자 교체’는 아동발달의 첫 단추인 자기와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아기는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

1) 입양아동의 친생자 입적관행은 입양이 아동인권이 무시된 부모중심 입양실천이라는 비판을 받게 하였지만, 우리사회의 입양은 가족개념과 아동복리 개념의 역사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입양아동은 생모, 입양기관, 입양부모를 기본적으로 거치므로, 입양부모를 만났을 때는 최소 3번이상 양육자가 바뀌는 경험을 한다.

며 돌보는 양육자를 믿고 따르면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입양아동은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능력에 크게 손상을 입은 아이들이다.

입양아동은 심리적으로 여전히 이전의 양육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그리워할 수 있고 연장아동들처럼 양육자로부터 반복된 거절감으로 인해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부모와 아기는 일찍 접촉하는 것이 심리적 끈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이수연 역, 2009). 자연스럽게 아이와 심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만난 입양부모는, 의식적으로 아동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정지된 애착주기를 재 활성화시키고 얼어붙어있는 발달을 재 작동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갖는다.

이 일은 입양부모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금할 필요는 없다. 아이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반응하기 마련이다. 아이가 부모에게 잘 반응하고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애착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양육자로부터 넘겨받는 ‘애착이전’은 아동의 애착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양부모가 입양아동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전 양육자로부터 이제는 입양부모와 계속 살게 될 것이며 이전 양육자가 새 양육자에게 아동을 사랑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으로, 아동이 애착이 된 사람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없이, 새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새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된다.

자신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란 부모를 바라는 존재이기에 입양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양육에 임하게 되면 아이는 입양부모를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사람과 절대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입양아동의 지체된 발달을 재 활성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은 ‘진짜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 과업이다.

3. 입양사실 말해주기

입양부모 역할 중에 가장 독특한 과업이 입양사실을 아이에게 알리는 일이다.

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정보는 입양부모에게 맡겨져 있다. 입양은 부모가 선택하고 시행하여 가족이 되었기에 만일 부모가 말해내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의 정체성은 왜곡 된다.

부모가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작 당사자는 모른 채 입양절차과정

에 연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면,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부모-자녀간의 신뢰감을 크게 잃게 된다.¹⁾ 자녀의 자기됨과 건강한 자기 정체성 형성을 도와야 하는 입양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입양의 가장 당사자 되는 입양아동에게 먼저 입양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일단 입양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입양부모는 ‘언제’ 또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지가 고민스럽다. 공개입양가족모임에 참여하거나 선배부모가 한 방법을 답습해보기도 한다. 어렵사리 입양된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는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불쑥 던지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종종 아이가 모르는 편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드는 출생배경과 초기정보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양부모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입양말해주기는 추상적인 개념인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부모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해 말해줄 때 부모태도와 감정은 아동의 입양자존감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어떤 공개입양부모들은 아이가 입양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입양결정 즉시부터 마치 미리 예방주사를 맞추듯이 입양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입양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해주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부모도 있다. 현재 국내입양기관의 입양부모교육에서는 늦어도 7살 전까지는 아동의 ‘입양됨’을 반드시 말해줄 것을 부모들에게 권하고 있다.

입양이야기를 해주는 때와 방법은 부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동이 자신의 입양됨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과 상실감으로 슬퍼하는 아이를 공감할 수 있는 부모의 건강한 정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사실을 이야기해줄 때의 부모의 태도는 입양아동의 자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과장된 슬픔을 표하거나 혹은 낯은 부모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면 부모와 동일시로 자아상을 갖게 되는 아동에게 입양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극단적으로 자기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입양부모는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말해주기에는 아이의 낯은 부모는 따로 있다는 것, 입양부모는 양육부모라는 것, 입양

1)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 부모들이 “너를 위해서 알려줄 수 없었다”란 말을 입양자녀가 이해하기까지는 입양과 사회 그리고 개인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해야 할 것이다.

됨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입양의 부정적인 면은 부모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한국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알려준다. 부모가 입양을 말할 때에는 먼저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말해주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 아이에게 친생부모가 아무리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친생부모가 아이를 싫어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입양의 부정과 긍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으려면 입양부모가 먼저 스스로의 입양에 관련된 심리적 문제와 편견을 자각하고 입양사실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양을 말해줄 때 입양용어를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의 정서에 ‘친’ 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력은 대단하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양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친권’을 부여받아 입양아동과 친부모-친자녀 관계를 인정받은 관계다. 오랜 관념에 따른 용어사용을 무심히 하다보면 입양가족은 웬지 부족하고 나아가 ‘비정상가족’ 혹은 ‘가짜가족’이란 느낌이 강화된다. 낯은 부모를 ‘친생모’ 혹은 ‘생모’ 라고 부르는 바른 용어사용을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입양사실 말해주기는 입양부모에게 언제나 도전적인 과제다. 입양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또한 외부적인 편견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입양사실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입양편견에 대처하기’란 부모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¹⁾

4. 자신에 대해 알권리 보호하기

개정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입양인)의 자신에 관해 알 권리를 보호한다. 제 36조는 ‘이법에 따라 양자된 사람은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권리는 성인입양인 경우는 스스로 행사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에 관한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아동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와 알 권리는 먼저 입양부모에 의해 채워지고 또한 지켜진다는 뜻이다.

1) 현재 입양부모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입양홍보회의 ‘반편견 입양교육’은 2003년 공개 입양부모들이 자신의 입양자녀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입양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원이다.

누구나 자신의 시작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면서 살아간다. 입양아동이 갖는 뿌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왜 나를 입양 보냈던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 란 욕구는 입양사실을 알게 된 아동들이 한결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입양아동은 뿌리찾기를 통해 자기 ‘존재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자신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낳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인생의 출발선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를 완성해가려고 한다.

배태순(1998)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 혈통과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존재적 욕구다. 그래서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는 인정되어야만 성공적인 입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V. 국내입양부모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입양부모교육의 필요성은 공개입양부모들에 의해 크게 인식되어져오고 있다.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지만 정작 그 다음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고 어려웠다는 경험을 말하곤 한다.

국내입양부모들은 200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공개입양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선 경험한 부모들로부터 입양아동의 행동 및 심리특성과 양육기술을 배웠다. 적극적인 입양부모들은 ‘한국입양홍보회’ 홈페이지(www.mpak.org)에 가족 일기장을 오픈하여 입양아동과의 생활상을 글로 올렸으며, 신생입양부모나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기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교육효과가 있었다.

초기 입양부모교육은 공개입양부모들에 의한 ‘자율적’이고 ‘경험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졌다. 더 적극적인 공개입양부모들은 스터디그룹을 형성하여 외국의 입양서적을 번역하여 나누었고, 거기에서 얻은 입양이론과 공개입양가족의 일기내용들을 엮어서 「콩깍지 입양」¹⁾을 만들었다. 이것은 최초로 국내입양부모들을 위한 교육교재로 사용되었다.

1) 2003년 김외선 외 8명의 공개입양부모들이 엮음. 입양심리이론과 입양일기가 수록되어있음.

2005년 이후부터는 입양기관에서도 입양부모모임을 형성하여 입양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주된 교육주제는 ‘공개입양’으로, 입양사실을 사회와 입양자녀에게 어떻게 말해낼지에 대한 것으로 주로 공개입양부모들의 경험담듣기로 진행되었다. 점차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의 주제는 아동심리, 부모심리, 부모기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입양가족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기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¹⁾

올해 정부지원으로 진행 중인 입양가족 사후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중에서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최근까지 국내입양부모들에게 입양홍보를 위한 행사나 매스컴 홍보에 참여를 권장했으나 개정입양특례법 발효 이후 입양가족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더 권장하고 있다.

<표 1> 2016년 입양가족 사후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No	기관		프로그램	
	이름	유형	주제	유형
1	한국입양 가족상담센터	입양 심리상담 전문기관	부적응 입양가족 사례관리	상담 심리치료
			문지방상담	상담 심리치료
2	한국 입양홍보회	입양가족 단체	입양가정대상별 역량강화 (부모교육+별캠프)	교육 캠프
			*청소년기 입양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지역별 입양가족자조모임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교육 캠프
3	홀트 아동복지회	입양기관	*긍정적 부모 모델링 교육프로그램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교육
			입양인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지원 “ HAPPY SMILE”	심리치료
			국내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함께하는 우리”	교육
4	대한 사회복지회	입양기관	모여라 님은꼴	캠프
			행복발전소	교육
5	동방 사회복지회	입양기관	*우리아이 알아가기(5)	교육
6	성가정 입양원	입양기관	혼자가 아닌 우리 4	교육
			함께 걸어가는 길	교육
7	건강한 입양가정지원 센터	입양가족 단체	*건설입양부모학교	교육
8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고위험 입양아동 청소년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

자료출처: 중앙입양원 (2016)

국내입양가족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입양기관 4곳, 입양가족 단체 2곳, 입양심리상담전문기관 1곳, 대학교 1곳으로 총 8곳에서, 총 17가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4개(*)프로그램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그 외

는 가족동반 캠프 진행 중에 약간의 부모교육이 가미되거나, 개별상담식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교육시간은, 주 1회 3시간씩 4~8회기로 진행되거나, 캠프진행 중에는 2시간씩 1~2회기 정도 부모교육에 할애되고 있다.

부모교육내용은, 아동심리발달, 부모감정코칭, 간단심리검사, 양육경험담, 성인입양인 경험담 듣기 등으로 이전의 공개입양이란 획일적인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부모교육교재로는, 입양부모 전용교재 없이 각 분야에서 초대된 강사들이 준비한 간단한 복사물 혹은 PPT자료가 제공된다.

부모교육강사로는, 저명한 교육강사 혹은 대학교수들이 초빙된다. 그들은 입양경험이 없는 고로 입양부분에서는 입양부모 혹은 성인입양인이 따로 초대되어 경험담 위주의 강의를 덧붙인다.

현재 시행중인 국내입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의 한계점을 들자면, 교육대상인 입양부모들의 특성 대한 연구와 이해가 매우 미비한 상태에서, 입양이 특화된 교육교재 없이, 입양지식이 빈약한 강사들에 의한 입양부모교육은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여러기관에서 유사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소수의 공개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완수해야하는 부담으로인해 줄속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상적이고 행사성이 농후한 교육프로그램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양아동양육을 위한 부모역량강화와 국내입양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입양부모교육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소고는 입양부모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했다.

피교육자가 되는 국내입양부모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적극적으로 부모된다', '소수집단에 속한다', '부모자격을 검정받는다', '부모기에 늦게 진입한다', '부모의 입양동기는 사회적

입양편견과 맞물린다’, ‘덧붙여진 부모과업이 있다’ 이다.

입양부모에게 덧붙여진 부모과업으로는, ‘친양자 탄생 신고하기’, ‘지체된 아동발달을 촉진 시키기’, ‘입양사실 말해주기’, ‘자신에 대해 알권리 보호하기’ 이다.

현행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입양부모에 대한 연구부족, 입양부모용 교재 부재, 입양전문교육자 부재 그리고 교육의 질보다 행사성으로 끝나는 교육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있었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입양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교육의 방향성’은 입양부모의 자기성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입양부모들은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부모가 된 사람들이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천한 입양선택이란 행동 이면에는, 입양부모 자신의 의식적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동기에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지닌 채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

입양부모에게 덧붙여진 과중한 부모과제와 부모 자신의 미해결 문제와 맞물리게 되는 경우, 부모역할은 더 무겁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입양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더 몰입되어 ‘부모역할장애’까지 경험하기도 한다.

입양부모의 자기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모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아동만 입양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입양으로 부모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키우고, 어떤 동기든 간에 입양선택이 자기성장을 위한 승화의 방편이 되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되어야한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시기’는 입양초기부터 시작하고 또한 지속적 이어야 한다.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원함과 의지가 높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입양초기에는 대체로 입양부모들이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아동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입양배치가 된 즉시부터가 부모교육을 시행하기에 최적기가 되겠고, 교육의 효과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가이드 없이 입양부모 노릇을 힘겹게 하다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험이 반복 되면,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입양선택을 후회할 수 있다. 만약 부모역할을 하다가 탈진상태에 빠진다면, 교육을 통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심리 치료 혹은 재활치료와 같은 더 복잡한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방이 최선이란 원리에 따라 입양부모교육은 입양부모로서 첫걸음마를 내딛는 순간부터 손을 잡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입양아동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전문성’이다. 현재 국내입양부모교육의 전문성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입양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입양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강사, 입양특성화 된 교육교재 그리고 입양부모의 필요·욕구에 부합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부모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향후 입양부모교육은 선행된 국내입양부모들의 특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인력양성, 교재제작 및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상용(200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양자의 인지청구 허용여부. *가족법연구* 14(0), 15-134.
- 김외선(2012). 불임여성의 입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상담* 2(2), 49-73.
- 백경숙·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과 권리* 5(2), 81-95.
- 배태순(2013). *입양성공의 요건*.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 변미희·안재진·권지성·최운선(2014).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9차년도 조사 - 발달지체 및 입상범주 입양아동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안소영(2015).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진(2010).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16(4), 71-95.
- 안재진·최운선·김세원(2013). *국내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모형개발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이현정(2001).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맹진(2002).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linor B. 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2007). *입양의 생애주기*. 서울: 신정
- H.van Gulden·L. M. Bartels-Rabb 공저.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권지성 공역(2006). 서울: 학지사
- Lois R. Melina 저. 이수연 역(2009). *입양아부모되기*. 서울. 궁리
- Nancy Newton Verrier 저, 뿌리의 집 옮김(2012). *원초적 상처*. 서울: 뿌리의 집
- www.mpak.org (사)한국입양홍보회 일기마을
- www.kadoption.or.kr 중앙입양원 입양정보 자료실